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393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6년 월 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이유

- 기업도시건설지원 사무를 건설교통국의 분장사무로 조정하고, 「공공기관이전지원단」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분장사무 조정
 - 건설교통국 : 기업도시 건설·발전 계획수립 및 지원
- 명칭변경
 - 공공기관이전지원단 ⇒ 혁신·기업도시건설지원단

3. 의안전문 : 붙 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 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기업도시 건설·발전 계획수립 및 지원

부칙(2006. 1. 1, 조례 제2895호) 제2항중 “공공기관이전지원단”을 “혁신·기업도시건설지원단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건설교통국)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4.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부칙(2006. 1. 1, 조례 제2895호)</p> <p>①(생 략) ②(한시기구) 자치행정국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, 건설교통국 <u>공공기관이전지원단</u>의 존속기한은 2008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.</p>	<p>제12조(건설교통국)</p> <p>1. ~ 14. (현행과 같음) <u>15. 기업도시 건설·발전 계획수립 및 지원</u></p> <p>부칙(2006. 1. 1, 조례 제2895호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 ②..... <u>혁신·기업도시건설지원단</u>..... </p>

관련 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02조 (행정기구)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,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·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6조 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 ①~③ (생략)

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(생략)

제7조 (실·국·본부등 기구의 설치) ① 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실·국·본부 및 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(생략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·국·본부의 개편, 명칭변경 및 사무분장을 함에 있어서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